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민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172

발의연월일: 2025. 2. 14.

발 의 자: 박민규·박희승·김한규

윤후덕 • 이훈기 • 김우영

박정현 • 윤준병 • 민병덕

황정아 · 강준현 · 유동수

강유정 • 한민수 • 진선미

부승찬 · 서영석 의원

(179]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하여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 또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이 연 1,500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, 납입액 세액공제 금액도 900만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. 특히, 안정적인 직장인이 아닌 이상 연간 소득의 편차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고, 소득이 많은 해에 노후 준비를위해 가능한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고려할 때 당해연도 소득 수준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은 불필요하다

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100분의 15로 일원화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100분의 12[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]"를 "100분의 15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 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3(연금계좌세액공제) ①	제59조의3(연금계좌세액공제) ①
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	
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	
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	
한 금액(이하 "연금계좌 납입	
액"이라 한다)의 <u>100분의 12[해</u>	<u>100분의 15</u>
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	
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	
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	
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	
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	
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	
5]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	
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	
서 공제한다. 다만, 연금계좌	
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	
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	
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	
없는 것으로 하고, 연금저축계	
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	
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	
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	
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	

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

로 한다.

1. • 2. (생략)

② ~ ⑤ (생 략)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